

『인도네시아,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에 대한 국가 표준의 의무적 준수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3.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
통보국	인도네시아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3,239 (2024)
작성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11
붙임. 규제 참고자료	11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7213:2014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기술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0월 15일 채택하고, 2025년 2월 19일 통보하였음

※ IND/19('08.02.05 통보)는 LPG용 고무 호스를 포함한 5개 제품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표준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후 발행된 추가 통보(Addendum) 문서는 5개 제품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추가 내용이나 수정 사항을 전달함. 본 개정 규정은 IND/19에 대한 Addendum으로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에 대한 SNI 표준 의무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IDN/19/Add.2에서 IDN/19/Add.11까지의 Addendum은 본 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와 다른 품목을 규제함

□ (규제요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현지로 수입되는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 제품이 SNI 7213:2014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SNI 인증서 발급, 생산 공정 심사 및 제품 품질 시험을 포함하는 Type 5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품질 보증의 책임 등을 규정

TBT 통보번호	▪ IDN/19/Add.12	통보일	▪ 2025-02-19
		고시일	▪ 해당 없음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시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No. 92/M-IND/PER/11/2007 on Mandatory Implementation of Indonesia National Standard for 5 industry product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산업부 ▪ Minister of Industry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평가, 인증 		
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0월 15일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18일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4월 18일까지(개정안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음)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 금속 또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또는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또는 부착하지 않은 것 <p>(HS code: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p> ▪ Tubes, pipes and hoses made of rubber - Exclusively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metal, textile materials, or other materials - With or without fittings <p>(HS code: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p>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 및 그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 외피, 호스 클램프, 호스 캡/마개, 호스 외피용 캡/마개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3,239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

2

개정 세부내용

□ 개정 대상 규정 및 조문 구조

○ 2024년 산업부 장관령 57호(이하, 개정 규정)

- 본 개정 규정은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에 대한 국가 표준의 의무적 준수를 규정하는 산업부 장관령 <15/M-IND/PER/1/2015('15.01.16. 발행)>과 <75/M-IND/PER/9/2015('15.09.29. 발행)>를 개정하여 대체함

○ 개정 규정의 조문 구조

- 본 규정의 조문은 7개 장 5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에 관한 Scheme 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표 1] 개정안 목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적용 범위
제3장 적합성 평가
제1절 일반 요구사항
제2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서 취득 절차
제3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라벨링 사용 승인
제4절 사후 관리 규정
제4장 책임에 대한 규정
제5장 기타 규정
제6장 과도기적 규정
제7장 종결 규정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스키마 문서 - 고무 호스

※ 개정 규정은 기존 규정 대비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건 및 요구사항들을 대폭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음. 본 보고서는 기존 규정 대비 변경사항은 2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3장에서 7장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들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고무 호스의 적합성 평가 활동 절차 요건 등을 규정
- SNI 인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요건과 요구사항을 규정
- SNI 인증 라벨링 및 SPPT SNI 신청 및 발급, 부착 관련 요건과 요구사항을 규정
- 인증 후 사후 관리 관련 요건과 요구사항을 규정
- 생산 공정 감사와, 품질 적합성 시험, SPPT SNI 절차, 사후 관리 절차 등을 명시하는 Scheme 문서를 규제원문 부속서에 첨부

□ 개정 규정의 참조 표준 및 적용 대상 범위(규제원문 2장)

○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의 적합성 평가 참조 표준

- 본 규정은 LPG용 스토브 고무 호스에 대한 강제 표준으로 LPG용 고무 호스의 품질 요건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7213:2014를 지정함
- 기존 규정에서 SNI 7213:2014와 함께 의무 표준으로 지정되었던 SNI 8012:2014는 개정 규정에서 제외함

○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 개정 규정에서는 적용 대상 범위 및 관련 SNI 의무 표준을 변경함
 - 기존 규정에서는 SNI 7213:2014 표준을 참조하는 LPG용 고무 호스(HS code 4009의 하위 범주)와 SNI 8012:2014를 참조하는 LPG용 스토브 TPE* 호스(HS code 3917의 하위 범주)를 규제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LPG용 스토브 TPE 호스 및 이에 대한 국가 표준 SNI 8012:2014 표준을 제외하고, LPG용 고무 호스의 HS code를 조정하였음
 - 적용 대상 예외 범위를 수정함

* Thermoplastic Elastomer: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표 2] 기존 규정 대비 개정 규정 변경사항 비교표 (규제원문 2조 및 3조)

기존 규정(15/M-IND/PER/1/2015)		개정 규정(2024년 산업부 장관령 57호)
2조	<p>제2조</p> <p>1. 다음의 제품 유형에 대해 SNI를 강제 적용하며, 각 제품은 아래와 같은 SNI 번호 및 HS 코드를 가진다:</p> <p>[SNI 8012:2014]</p> <p>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 소재 LPG 가스레인지용 호스 (부속 장치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3917.32.90.00 - Ex. 3917.39.00.00 <p>(부속 장치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3917.33.00.00 - Ex. 3917.39.00.00 <p>[SNI 7213:2014]</p> <p>고무 소재 LPG 가스레인지용 호스 (부속 장치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9.31.99.10 	<p>제2조</p> <p>1. SNI 7213:2014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을 강제로 적용한다</p> <p>2. 제1항에서 언급된 고무호스는 부속 장치가 있거나 없는 고무호스 제품으로서 다음의 HS Code를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4009.21.90 - Ex. 4009.22.90 - Ex. 4009.31.99 - Ex. 4009.32.90 - 4009.41.10 - 4009.42.20 <p>3. 제2항에서 언급된 부속 장치는 다음으로 구성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 외피 - 호스 클램프

	기존 규정(15/M-IND/PER/1/2015)	개정 규정(2024년 산업부 장관령 5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4009.41.00.00 (부속 장치가 있는 경우) - 4009.32.90.10 - Ex. 4009.42.90.00 <p>2. (1)항에 언급된 LPG 스토브 호스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경화시켜 제조하고 금속 실 또는 와이어로 보강하고 덮개를 씌운 호스, 또는 b. 가황 고무로 만든 호스로, 금속 실 또는 와이어로 보강하고 코팅으로 덮었습니다 <p>3. (1)항에 언급된 부속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호스 슬리브 b. 호스 클램프 c. 호스 외피 d. 호스 슬리브 외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 마개/캡 - 호스 외피용 마개/캡 <p>4. 제2항에서 언급된 고무호스는 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어야 한다</p> <p>※ 2조 2항에 언급되는 Ex는 일부 품목만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함</p>
3조	<p>제4조</p> <p>LPG용 스토브 호스에 대한 SNI 강제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제2조에서 언급된 LPG용 스토브 호스와 기술적 사양이 다른 제품 b. 제2조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HS 코드를 가진 수입산 LPG용 스토브 호스, 해당 제품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개발용 - SPPT-SNI 신청을 위한 시험용 샘플 c.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HS 코드 및 제품 유형이더라도,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개발 목적 - SNI 인증 시험용 샘플 	<p>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고무호스에 대한 SNI 강제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술적인 특성상 동일한 유형의 제품이지만, 별도의 표준을 갖고 있으며, 적용 범위, 분류 또는 품질 요건이 강제 표준과 다른 경우 b) SNI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 용 샘플 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시험용 샘플 고무호스는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LPG 용기 밸브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규제원문 3장 1절)

○ 적합성평가 방법(규제원문 6조)

- 다음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Type 5 인증 시스템을 적용함

①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적용 및 생산 공정 감사

② SNI 1591:2022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

○ (생산 공정 감사 기관) 제품 인증 기관(이하, LSPro*)

* 산업용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 인증을 수행하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 기관으로, 국가 인증 위원회(이하 KAN)에서 인정하고, 주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품질 적합성 시험의 방법 및 요건(규제원문 7조)

- 품질 적합성 시험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험소(이하, 국내 시험소) 또는 해외 시험소에서 수행함

① (국내 시험소의 요건) KAN에서 인정하고, 주무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② 해외 시험소의 요건

→ 국제 인증 협력을 통해 상호 인증 협정 서명 기관에 의해 적절한 범위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며

→ 해당 시험소가 위치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기술 규제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고

→ 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

○ SNI 인증서의 발급 요건(규제원문 9조)

- 주무 기관은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후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발급 대상)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생산자** (이하,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

*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며 고무 호스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법적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하며 고무 호스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① 브랜드 협력* 또는 위탁생산**의 경우, 이를 제공받는 산업 기업이나 해외 생산자 중 각각의 1명의 브랜드 협력 제공자 또는 위탁생산 제공자에게 발급

* 해외 제조업체 또는 산업 기업이 협력 제공자로서, 다른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인

협력 수령자와 체결한 협력 형태로, 협력 제공자가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고무 호스를 생산하고, 협력 제공자의 브랜드(상표)를 사용하는 협력 방식

** 산업 기업이 아닌 사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체가 아닌 외국 사업자가 협력 제공자이자 상표 소유자로서,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인 협력 수령자와 체결한 협력 형태로, 협력 제공자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고무 호스를 생산하는 협력 방식

② (인증서의 보유 및 기재) 상기 발급 대상자는 생산 장소당 1개의 SNI 인증서만 보유할 수 있으며, 1개의 브랜드만 기재할 수 있음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의 요건(규제원문 10조 및 11조 (1))

- 규제원문 10조와 11조 (1)항은 산업 기업과 해외 생산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는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생산 시설과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해외 생산자의 SNI 인증서 발급을 대리하는 공식 대리인의 요건(규제원문 11조 (2)~(6))

- 규제원문 11조 (2)항 ~ (6)항은 공식 대리인의 요건을 규정함
- 해외 생산자가 SNI 유효기간 만료 전 공식 대리인을 교체하면, 해당 인증서는 효력을 상실함

□ 고무 호스에 대한 SNI 인증서 발급 신청 (규제원문 3장 2절)

○ SNI 인증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처리 관련 주요 내용

- 규제원문 3장의 2절은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 목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무 기관의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고무 호스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고무 호스에 대한 SNI 인증 라벨링 관련 요구사항 (규제원문 3장 3절)

○ 라벨링 종류 및 부착 방법

- 라벨링은 (i)SNI 라벨링과 (ii)전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무 기관의 라벨링 사용 승인이 필요
- 위에서 언급한 SNI 라벨링 사용 승인에 대한 증명을 위해 SNI 라벨링 사용 승인서(이하, SPPT SNI)가 필요함

- 라벨링의 구체적인 부착 방법은 다음 표를 참조

[표 3] 라벨링의 구체적인 부착 방법 (규제원문 부속서 E)

부속서 E.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 부착

1.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은 SNI 7213:2014 요건을 충족하는 고무 호스 제품의 적합성 증명으로 사용된다.
2.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 부착은 SPPT SNI를 통해 기관장으로부터 SNI 라벨링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된다.
3. SNI 마크 부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 a. 모든 고무 호스 제품 본체에 SNI 마크를 인쇄 방식으로 부착
 - b. 모든 고무 호스 포장 라벨에는 SNI 마크와 전자표시를 인쇄 방식으로 부착
→ 이때,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4. 전자표시는 고무 호스 포장 상의 SNI 마크 바로 아래 또는 옆에 부착되어야 한다.
5. SNI 마크 외에도, 제품 본체에는 눈에 잘 띄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a. 생산 연도
 - b. 브랜드(상표)
 - c. 사용 압력(정격 압력)
6. SNI 마크와 전자표시 외에도, 포장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전자표시가 눈에 잘 띄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a. 생산 월 및 연도
 - b. 브랜드(상표)
 - c. 사용 압력(정격 압력)

○ SPPT SNI의 발급 관련 요건

- (유효 기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매년 갱신할 수 있음
- 규제원문 30조 ~ 39조는 SPPT SNI 발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 목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무 기관의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SPPT SNI를 발급하는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고무 호스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고무 호스 SNI 인증 후 사후 관리 요구사항 (규제원문 3장 4절)

○ 사후 관리(Surveilen) 관련 요건

- SNI 인증서를 발급한 LSPro가 정기적으로(1년에 한번) 또는 불시에(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또는 주무 기관 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 규제원문 40조 ~ 46조는 LSPro의 사후 관리 수행 방법과 준수 및 제재 요건

등을 명시함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사후 관리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고무 호스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품질 보증 책임 요구사항(규제원문 4장)

- 고무 호스의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규제원문 47조)
 - 자체 브랜드로 고무 호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자와 공식 대리인이 해외 제조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여 고무 호스를 유통하는 경우 고무 호스의 품질 보증 책임이 있음
- 브랜드 협력 및 위탁생산 방식에서의 품질 보증 책임(규제원문 48조)
 - ① 산업 기업이 생산한 고무호스가 공장 내에 있을 경우
 - 브랜드 협력 또는 위탁생산을 제공받은 산업 기업
 - ②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고무호스가 공식 대리인의 창고 및/또는 관리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 브랜드 협력 또는 위탁생산을 제공받은 해외 생산자를 대표하는 공식 대리인
 - ③ 상기 장소를 벗어난 고무 호스는 다음 중 하나의 대상에게 품질 보증 책임이 있음
 - 브랜드 협력을 제공한 국내 산업 기업 또는 브랜드 협력을 제공한 해외 생산자를 대표하는 공식 대리인 또는 위탁생산을 제공한 국내 사업자 또는 위탁생산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현지 대표

□ 기타 요구사항(규제원문 5장)

- 해외 생산자가 제조한 고무 호스의 입고(규제원문 49조)
 - 유통 또는 소유권 이전 전 공식 대리인이 보유한 창고로 입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을 명시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SNI 인증서 또는 SPPT SNI를 보유한 고무 호스의 유통 요건(규제원문 50조)
 - 국내 생산의 경우, SNI 인증서와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
 - 수입 제품의 경우, SNI 인증서와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 의무를 완료한 제품

- 제품의 품질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생산 공정 감사 및 품질 적합성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규제원문 53조)
 -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생산자의 공식 대리인을 통해 산업 기업이나 해외 생산자에게 청구함

□ 개정안의 과도기적 규정 (규제원문 6장)

-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된 SNI 라벨링 사용 제품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 해당 인증서는 본 개정 규정에 따른 SNI 인증서 및 SPPT SNI로 간주하며, 2026년 4월 18일까지 본 개정 규정의 요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 2025년 4월 18일 이전 기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적합성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 본 개정 규정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함
- 기존 규정에 따라 SNI 라벨링을 부착한 고무 호스의 전자 라벨링
 - 전자 라벨링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며, 다음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2026년 4월 18일 이내에 유통할 수 있음
 -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생산된 국내 생산 제품
 -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세관 의무를 완료한 수입 제품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표준

- 본 개정안의 규제 대상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다음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을 참조함
 - SNI 7213:2014 (LPG용 고무 호스)

불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 개정 규정의 원문 출처
 - 인도네시아 국가재정감사 법제 감독 및 개발 총국: [URL](#)
 - 또는 WTO TBT 질의처: [URL](#)